조경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97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 박성훈·이종욱·이헌승

김성원 • 안상훈 • 김기웅

김도읍 · 임이자 · 김종양

이상회 • 조배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,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,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% 이상이며,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% 이상일 경우지정이 가능하며,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접하여 상주하고,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,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.

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 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·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·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

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및 제8조 등).

법률 제 호

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에게"를 "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에게"를 "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에게"로 한다.

제9조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"을 "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 및"을 "국토교통부장관이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)	제7조(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	①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ㆍ
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	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
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	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
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	<u>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</u>
을 조경진흥시설(이하 "진흥시	
설"이라 한다)로 지정하고, 자	
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	
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	
수 있다.	
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	2
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<u>국토교통부장관에게</u>	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
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	<u>• 도지사</u>
	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	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・도
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	<u>지사는</u>
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	
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	
있다.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	
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	
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	
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	

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·⑤ (생 략)

제8조(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)

- ① <u>국토교통부장관은</u>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(이하 "진흥단지"라 한다)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.
 - ② <u>국토교통부장관은</u>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 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 설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<u>국토교통부장관에게</u>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9조(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) <u>국토교통부장관은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

•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)
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
지사는
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・도
지사는
<u>.</u>
③
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
· 도지사에게
 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
지정 해제) <u>국토교통부장관이</u>
<u>나 시·도지사는</u>

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16조(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 시장・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 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 이고,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.

- ②・③ (생 략)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·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
및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이
<u>나 시·도지사는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